

부산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52633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5263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10100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스틸플라워

피고, 항소인센텀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5. 9. 10.

판결 선고 2015. 10. 1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1010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236,89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천대엽

판사이혁

판사박찬호

별지